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방형직위(보건소장) 채용 연장 공고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방형직위(보건소장)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을 갖춘 역량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13일

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



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임용직위	임용직급	채용인원	근무기간	담당직무 내용
서대문구 보건소장	(임기제)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(개방형4호)	1명	2년	- 지역 의료서비스 종합계획 수립·추진 - 보건기획, 인사·예산·회계, 보건정보 교육에 관한 사항 - 방역대책 수립, 전염병 예방 접종에 관한 사항 - 보건교육, 구강위생, 가족계획, 방문간호, 정신보건,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 - 의료법,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, 약사법 시행, 성인병 예방에 관한 사항 - 식품·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·감독, 원산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

※ 근무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 성과 등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2. 법령근거

-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
-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
-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

3. 응시자격 요건

○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지역·연령·성별 : 최종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인 자로 지역·성별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※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- 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 - 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 - 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 - 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 - 마. 삭제 <2022. 1. 4.>
 - 바. 삭제 <2022. 1. 4.>
 - 사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
 - 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 - 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

※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○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

구 분		자 격 요 건
학력 기준	박사학위 소지자	•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
	석사학위 이하 소지자	•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
경력 기준	공무원	•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•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
	민 간	•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※ 관련분야 : 보건, 식품위생, 의료기술, 의무, 약무, 간호, 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※ 우대조건 : 전문의 자격 소지자		

※ 공통요건과 응시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※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

※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,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

4.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

○ 근무시간 : 주40시간(1일 8시간)

○ 연봉액

- 경력직공무원 :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적용
- 일반임기제공무원 :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

임용직급	상한액	하한액
개방형 4호	-	70,490천원

※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,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30%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경력·능력·자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가능

- ※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 (실업급여)에 가입 희망 시 가입가능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.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6. 10. 26.(월) ~ 10. 30.(금) <09:00~12:00 / 13:00~18:00, 중식시간 제외>
- 접 수 처 : 서대문구 연희로 248,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(본관 3층)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(대리접수 가능, 팩스·택배·퀵서비스·인터넷 등의 접수는 불가 / 대리접수시 응시자 신분증 사본과 접수자 신분증 필수 지참)

※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(우편환) 동봉 제출

※ 우편접수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(☎02-330-1058)에게 접수 확인 (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분에 한해 유효함)

- ※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
※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- 수입증지 판매처 : 구청 1층 민원여권과, 수입증지 가격 : 10,000원

※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

○ 시험일정

내 용	일 정	비 고
서류전형	2026. 11. 10.(화) 예정	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6. 11. 11.(수) 예정	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
면접시험	2026. 11. 16.(월) 예정	시간 및 장소 별도 안내
최종 합격자 발표	2026. 11. 23.(월) 예정	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

※ 시험일정,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○ 시험방법

- 1차 시험(서류전형) : 형식요건 심사
 - 응시자 제출서류에 의한 자격 및 경력 등 임용자격 형식요건 심사

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된 경우(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재공고할 수 있으며, 재공고시 재공고를 통한 추가접수 후 2차 면접대상자 결정

- 2차시험(면접시험) : 적격성 심사

· 1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

· 전문가적 능력, 전략적 리더십, 변화관리능력, 조직관리능력,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심사

· 전형결과 책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
○ 최종 합격자 발표 :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6. 제출서류

○ 응시원서(첨부1) 1부

- 응시수수료 : 10,000원 (서대문구청 1청 민원여권과)

※ 응시원서에 수입증지를 부착하여 접수처에 제출

※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환 등으로 해당금액 동봉

※ 응시원서 접수 당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

○ 이력서(첨부2)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

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

○ 자기소개서(첨부3) 1부

○ 직무수행계획서(첨부4) 1부

○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(첨부5) 1부

○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첨부6) 1부

○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첨부7) 또는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) 1부

○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(첨부8) 1부

○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,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
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- 사본 제출가능(단,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)

-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(보험가입 전체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) 1부
-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 또는 사본)
 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 - 비상근,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
 -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첨부9)' 추가 제출
- ※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- 응시자격 관련 증빙자료(자격증, 외국어능력 증명서 등)
 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
- 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- ※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※ 사본 제출 자료 중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
- ※ 모든 제출서류는 단면 인쇄(양면인쇄 금지)하고 스테이플러·띠지 등 사용 금지

7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,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불합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화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 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

- 공무원연금법 제50조(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지급정지)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재채용시 해당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
-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,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,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며,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연장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.
-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(☎ 02-330-1058)